

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(제12조제1항 관련)

1. 공동시설

보관창고(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)와 검량(檢量)·포장 장치(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를 갖추는 것

2. 비료별 생산시설

비료별	시설기준
가. 보통비료	
1) 질소질비료	반응장치 또는 피복장치(被覆裝置) 등 생산시설
2) 인산질비료	반응장치 또는 동력분쇄기 등 생산시설
3) 칼리질비료	동력분쇄기 등 생산시설
4) 복합비료	동력배합기(액상비료의 경우 반응장치 또는 용해장치를 말한다) 등 생산시설
5) 석회질비료	동력분쇄기 또는 소성로(燒成爐) 등 생산시설
6) 규산질비료	동력분쇄기 또는 동력채장치 등 생산시설
7) 고토비료(苦土肥料)	반응장치, 건조장치 또는 탈수장치 등 생산시설
8) 미량요소비료	반응장치 또는 동력배합기 등 생산시설
9) 그 밖의 비료	비료의 종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시설
나. 부산물비료	
1) 부숙유기질비료	발효시설 등 생산시설
2) 유기질비료	동력분쇄기(중제 가축분의 경우에는 찌는 장치를 포함한다) 또는 건조장치 등 생산시설
3) 미생물비료	배양기 등 생산시설
4) 그 밖의 비료	비료의 종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시설